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63
----------	-----

2023. 12. 12.(화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1월 29일

-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동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·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

- 안 제4조의2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정 주체, 대행자의 산출근거 제출 의무, 도지사의 재산출 요구 권한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- 타시도의 경우 조례에서 시장·도지사 또는 대행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고,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
  - 대행자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주체로 정하는 경우, 시장·도지사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,
  - 우리 도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주체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참 고**

안 제4조의2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수수료 산정주체, 산출근거 제출의무, 재산출 요구규정 유무에 대한 타시도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.

시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수수료 산정주체	대행자	대행자	대행자	×	×	대행자	×	대행자
산출근거 제출의무	○	×	○	×	×	○	×	○
재산출 요구규정유무	○	○	○	×	×	○	×	○
시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수수료 산정주체	대행자	대행자	대행자	대행자	대행자	×	대행자	대행자
산출근거 제출의무	○	○	○	○	○	×	○	○
재산출 요구규정유무	○	○	○	○	○	×	○	○

- 안 제7조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, 대행자의 선정기준, 대행기간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, 대행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11. 21. ~ '23. 11. 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#### 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·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는 만큼 해당 개정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##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3년” 을 “5년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) ① 대행자는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.

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,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계법령

### □ 자동차관리법

제2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“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7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~ ③ (생략)

④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⑤ ~ ⑫ (생략)

### 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②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~ 12. (생략)

13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

14. ~ 35. (생략)

④ (생략)